

고객지향-스피드경영-투명경영



(주) 삼양 옵틱스

<http://www.syopt.co.kr>

우)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24 동성빌딩 3층 Tel. (02) 784-9961 Fax. (02) 552-1411

문서번호 : 삼양OPTICS 2010-기획-003 2010. 02. 10.
담당 : 기획부 차장 양태영 Tel.02-784-9961 Fax. 02-552-1411
수신 :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정책과장)
참조 :
(경유)
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항상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내용에 대하여 본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3. 녹색성장을 위한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부. 끝.

(주)삼양 옵틱스 대표이사

(직인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가.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에 대한 예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별표1 중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나. 건의안

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의안

별표1 중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의안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건의 이유

가. 상위법이 정한 바에 따른 규칙의 일관성 정비

- 금번 2010년 2월 7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 기준)에 따르면, 저속전기자동차를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5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는 두 가지의 차량특성, 즉 ‘최고속도’와 ‘차량중량’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6항에 따르면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합니다. 같은 규칙 제2조7항에서는 “차량총중량”을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량중량’이 세부규칙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차량총중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이 정한 바를 배척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금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정의 중 ‘차량총중량’은 ‘차량중량’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법의 개정이유에 따른 목적 부합성 결여

- 금번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유 중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개선,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 미래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개발 및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 구역에서는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 개정 이유인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동차의 운행과 다양한 운행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속의 전기자동차가 지정된 구역을 운행하는 만큼 운송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차량탑승인원, 최대적재량 등이 일반 승용차에 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차량총중량을 1,100킬로그램으로 정하게 되면 저속전기자동차의 구조상 배터리무게 등으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2명 정도로 제한되고, 최대적재량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은 극도로 제한되고 보급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차량총중량 제한의 근거 결여

- 상기 일부 개정안에서 언급된 저속전기자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은 그 근거가 불투명하며, 법적 명확성과 관계성이 빈약해 보입니다. 동 규칙 어느 조항에도 저속전기자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 기준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점 때문에 저속전기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주1에 따라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범주로 분류하되, 저속으로 운행되는 전기자동차이므로 속도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차량총중량등)에 의하면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운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총중량을 20톤 미만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에는 없는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만 1,100킬로그램의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중 경형인 G사의 신형 마티즈의 경우 차량중량이 910킬로그램으로 5인승 기준 차량총중량은 1,235킬로그램 이상이 됩니다.
- ‘저속전기자동차’라는 통상적인 개념은 저속으로 운행되는 전기자동차를 지칭한다고 볼 때, 별도의 차량총중량 제한사항은 그 개념을 넘어선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개정안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저속전기자동차’ 대신에 ‘저속저중량전기자동차’라 함이 옳을 것입니다.
- 또한, 세계적 활황기를 맞이한 현재의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보급과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라. 차량총중량 제한에 따른 안전장치 및 편의 장치의 강화 미비

-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저속 운행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완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차량총중량으로 저속전기자동차의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안전기준과는 무관한 규제로 보입니다.
-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각종 안전장치나 편의장치의 설치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정해진 차량총중량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특정업체만의 독점적 배급 우려

-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보급노력과 기업 간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관련 제도나 규정이 일부 업체의 품목에만 적합하도록 만들어 진다면 그 보급노력이 소비자의 외면과 국민의 불신을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금번,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C사의 특정 2인승 저속전기차를 위한 법안이라는 향간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차량총중량에 대한 제한사항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건의에 대한 결론

- 상기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규칙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정의를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 대신에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그러나 2010년 2월 7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서 저속전기자동차를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로 정의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관련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이 가능한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로 해당 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이상 본사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 · 건의안 조문대비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 정 안	건 의 안
<p>별표1 중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p>	<p>별표1 _____</p> <p>_____</p> <p>4. _____</p> <p>_____ 차</p> <p>량중량 _____</p> <p>_____</p> <p>_____</p>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 정 안	건 의 안
<p>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6.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p>	<p>제2조 _____</p> <p>_____</p> <p>56. _____</p> <p>_____</p> <p>차량중량 _____</p> <p>_____</p> <p>_____</p>